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23일, 임오경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8. 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 9. 3.)

상정·축조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

11. 21.)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1. 26.)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임오경의원)

PC 및 모바일 기기와 이를 활용한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되고, 특히 사회적 관계 서비스(SNS) 등이 일반화되면서 메신저, 블로그, 커뮤니티 등과 같은 SNS 이용이 활발해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각종 연구에서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이 장애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장애인의 PC·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과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비장애인 대비 낮은 수준임.

고령층도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언급되고는 있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 정보 격차를 겪는 경우가 많음.

현재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 관련 지침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접근성 항목에 대한 제공업체의 준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 관계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두고, 이와 함께 정부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나아가 삶의 질과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최근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장애인·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서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을 규정하였는데 같은 내용을 중복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조문 정리가 필요해 보임.
- 또한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중 고령자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현)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